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37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김준혁 · 안도걸 · 박희승

윤종오・김문수・강유정

박수현 • 민형배 • 허성무

권칠승·김병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사업법 상 담배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어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이 2016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니코틴을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내에 유통해 왔음.

이후 정부는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조작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탈세 방지를 위해관련 법률인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연초의 잎, 줄기, 뿌리를 구분하지 않고 연

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연초에서 추출된 모든 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이들 업체들은 다시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이제는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의 언론보도(2024년 10월 2일 SBS보도)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52개 액상 전자담배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중 50개의 제품에서 연초잎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바있음.

현재 합성니코틴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과 달리 화학물질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으로서 RS니코틴, S니코틴과같은 합성니코틴은 그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조방법을 보면 연초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음.

또한,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환경부의 규제를 받고 있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한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유해성 심사를,「화학물질관리법」은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규정하고,특별히 2% 초과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합성니코틴이 「담배사업법」 등의 규제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여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하여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으로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과「지방세법」상의 세금 등을 탈세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담배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도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담배의 정의 규정에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포함함(안 제 2조제1호).
- 나.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전자담배의 개념과 같이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는 건강상 유해한 담배로서 단속과 세금 부과의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의 제품을 담배 소비자가 담배로 오인하여구매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 다.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는 경우 궐련담배와 같이 액상 형태의 담 배제조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자담배도 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 라. 전자담배 판매를 위한 간판의 설치 등 옥외광고를 금지하고, 전자 담배로 오인될 수 있는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담배 유사제품은 담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배라고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담배의 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함(안 제25조제목, 안 제2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안 제25조제6항).
- 마. 누구든지 연초 잎에서 추출한 액상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거짓 합성니코틴 제품의 단속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이러한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함(안 제25조의6 신설).
-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 령 위반 실태, 담배의 수입 및 세수 실적, 불법 전자담배의 탈세 및 단속 결과, 담배의 유해성 평가 결과,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등의 청소년 흡입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담배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의7 신설).
-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담배 연초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 액상니코 틴 등에 대한 유해성 비교평가 및 식별 검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담배 유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기 준과 전자담배 연초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식별기준을 정해 불법 전자담배 등의 단속 및 탈세 조사 등의 과정 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단속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담배 및 담배 유사제품의 만연 등으로 인한 금연구역 등에서의 청소년 흡입과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9 신설).
- 자. 기획재정부장관은 탈세조사, 실태조사 및 단속 등을 위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신설).
- 차.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연호 및 니코틴을 합성니코틴 등으로 속여 판매하는 담배 제조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불법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만연과 대규모의 조직적인 탈세를 방지함(안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신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담배"란 제1호의 담배로서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연초 니코틴 용액인 액체 형태의 담배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담배의 담배제조업 허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중 "광고의 제한"을 "광고의 제한과 전자담배의 옥외광고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 제3항에 따른 전자담배의 옥외광고 금지 내용, 제4항에 따른 전자담배 소매인의 담배 유사제품 표시・광고 금지 또는 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 담배 유사제품의 담배 오인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으로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담배에 대하여 간판의 설치 등 옥외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담배에 대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소매인이 전자담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로 오인될 수 있는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배라고 표시·광고하 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 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6(연초잎 액상니코틴을 거짓으로 합성니코틴 등으로 표시 또는 판매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연초 외에 첨가하는 일체의 물 질의 명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 2. 연초 잎 액상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합성니코틴, 무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원료명을 거짓으로 표시 하거나 이를 속여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의7(담배의 효과적 관리와 국회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 영하여야 한다.

- 1. 담배 수입·제조·판매 현황 정보의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2. 담배의 세수 현황 및 세수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불법 전자담배 등의 탈세조사 등에 관한 사항
- 3. 담배의 인체 유해성 관리·검사·평가 및 유해성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4. 담배의 성분분석 및 성분관리 · 계획에 관한 사항
- 5. 전자담배의 연초 잎 액상니코틴과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유해성 비교평가 및 식별 결과
- 6. 담배의 이 법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 불법 전자담배 등의 단속, 수사, 재판, 담배 몰수·추징에 대한 사항
- 7. 담배의 정의, 담배의 관리 및 소관 부처 체계, 담뱃세 부과, 담배 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의 관리체계, 유해성 검증체계 등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국외 사례·규제 동향에 관한 사항
- 8.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담배 및 담배 유사제품의 만연 등으로 인한 금연구역 등에서의 청소년 흡입 대책 및 사회적인 문제에 관한사항
- 9. 그 밖에 담배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수사기관, 담배 수입·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담배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의8(담배 연초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유해성 등 비교평가 및 식별 검사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검사기관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의7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담배 연초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유해성비교평가 및 식별 검사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전자담배 등의 발암물질 성분 등을 고려하여 담배 유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기준과 전자담배 연초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식별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식별기준은 불법 전자담배 등의 단속 및 탈세 조사 등에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 제25조의9(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담배 및 담배 유사제품의 만연 등으로 인한 청소년 등의 흡입 대책수립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의 7제1항제8호에 따른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담배 및 담배 유사제품

의 만연 등으로 인한 금연구역 등에서의 청소년 등의 흡입 및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의10(불법 전자담배 등의 범정부적인 실태조사, 탈세조사 및 단속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의7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탈세조사, 실태조사 및 단속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5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연 초 외에 첨가하는 일체의 물질의 명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광 고하는 자
- 4. 제25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연초 잎 액상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원료명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속여서 판매하는 자제2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와"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게 거 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을</u>	1연초(煙草)의 잎,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	<u>줄기, 뿌리를</u>
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	
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전자담배"란 제1호의 담배
	로서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호
	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
	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연초 니코
	 를 말한다.
	<u> </u>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0 096 0-6 7185	·

단 신설>

② (생략)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후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전 자담배의 담배제조업 허가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표시 및 광고의 제한과 전자담 배의 옥외광고 금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담 배에 대하여 간판의 설치 등 옥외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담 배에 대한 옥외광고물을 설치 한 소매인이 전자담배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로 오 인될 수 있는 합성니코틴, 무니 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 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표시 · 광고를 하는 행 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 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할 수 있다.

<u>④</u> (생 략) <신 설> 에 따른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배라 고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 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5조의6(연초 잎 액상니코틴을
거짓으로 합성니코틴 등으로 표시 또는 판매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연초 외에 첨가하는 일체의 물질의 명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 2. 연초 잎 액상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합성니고틴, 무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원료명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속여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7(담배의 효과적 관리와 국회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배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담배 수입・제조・판매 현황

 정보의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2. 담배의 세수 현황 및 세수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
 행, 불법 전자담배 등의 탈세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3. 담배의 인체 유해성 관리・

 검사・평가 및 유해성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4. 담배의 성분분석 및 성분관리 · 계획에 관한 사항
- 5. 전자담배의 연초 잎 액상니 코틴과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 에 대한 유해성 비교평가 및 식별 결과
- 6. 담배의 이 법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 불법 전자담배 등 의 단속, 수사, 재판, 담배 몰수 · 추징에 대한 사항
- 7. 담배의 정의, 담배의 관리 및 소관 부처 체계, 담뱃세 부과,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 제품의 관리체계, 유해성 검증체계 등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국외 사례·규제 동향에 관한 사항
- 8.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담배 및 담배 유사제품의 만연 등 으로 인한 금연구역 등에서의 청소년 흡입 대책 및 사회적 인 문제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담배의 관리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부
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수사기관, 담배 수입・제
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담배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만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 개 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8(담배 연초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 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유해성 등 비교평가 및 식별 검사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검사기관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의 7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담배연초 액상니코틴 및 비담배액상니코틴 등에 대한 유해성 비교평가 및 식별 검사를 위해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전자담배등의 발암물질 성분 등을 고려하여 담배 유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기준과 전자담배연 초액상니코틴 및 비담배액상 니코틴 등에 대한 식별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이 식별기준은 불법 전자담배등의 단속 및 탈세조사 등에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제25조의9(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담배 및 담배 유사제품의 만연 등으로 인한 청소년 등의 흡입 대책수립 등)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5조의7제1항제8호에 따른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담배 및 담배 유사제품의 만연등으로 인한 금연구역 등에서의 청소년 등의 흡입 및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

<신 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27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 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의10(불법 전자담배 등의 범정부적인 실태조사, 탈세조사 및 단속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의7제1항제2호 및 제6호 에 따른 탈세조사, 실태조사 및 단속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 여 매년 1회 이상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 다.

----- 5년 ----- <u>5천</u>만원---

- 1. 2. (현행과 같음)
- 3. 제25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 용된 연초 외에 첨가하는 일

②・③ (생략)

-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비금에 처한다.
 - 1. ~ 4. (생략)
 -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6. 7. (생략)
 - ② (생략)
-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과</u> 담배 는 몰수한다.
 - ② (생 략)

체의	물질의	명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자					

- 4. 제25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연초 잎 액상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합성니코 틴, 무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원료명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속여서 판매하는 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벌칙)	(1)
	_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 6.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 연초(煙草)의 잎, <u>줄기, 뿌리와</u>-----

② (현행과 같음)